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03.11. 24

나. 회부일자 : 2003.11.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3.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 계 중 의원)

3. 제안이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2000. 12. 30)으로 폐지됨에 따라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인용법률의 개정(안 제1조)
- 법률개정으로 소관부처의 변경(안 제5조)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신덕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경으로 서구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5조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u> ----- ----- ----- ----- -----.</p>
<p>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u>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u></p>	<p>제5조(지방채 발행 등) 1. ----- <u>행정자치부장관</u> ----- -----</p>